

구 원경전자 염산누출 사고 조사 보고서

2019년 11월 2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구 원경전자가 위치했던 공장(시흥시 마유로 144번길 41)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사고지역 현장조사, 정보공개청구, 정부 관계부처(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흥시 환경정책과) 면담, 노동안전 분야 시민단체 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고민하여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현장조사 당시 증언해주신 분들, 면담에 응해주신 정부부처 관계자, 자문 해주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 이번 사고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의문

- (1) 기업이 자진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현실
- (2) 1차 반응은 알리지 않아도 됐을까
- (3) 2차 반응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때도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던 사람들
- (4) 나는 아픈데 기준치 미만이니깐 괜찮은 걸까
- (5) 인근 공장에 버려져있는 보호복
- (6) 갑자기 일 폭탄을 맞은 노동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

3.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1)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도는 효율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2)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안내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3)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인근 주민·노동자·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4) 화학사고 피해자들이 권리와 구제 절차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5) 사고 직후 신속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화학사고 대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7) 지자체의 화학사고 담당 인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4. 앞으로는 이렇게

- (1) 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자체에 요구합시다
- (2)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라면 작업을 중단합시다
- (3) 화학물질 규정을 위반하는지 노동자·주민들이 감시합시다
-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시다

5. 나가며

1.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원경전자라는 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원경전자는 약 2년 전에 폐업한 PCB 제조업체입니다. 2년 동안 비어있던 공장을 얼마 전 한 업체가 인수하였고,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경전자는 공장을 운영할 당시 염산을 사용했는데, 공장 문을 닫을 때 쓰다 남은 염산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 버려두고 간 염산이 누출되어 가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스에 대한 첫 신고가 이루어진 건 8일 새벽 1시경입니다. 당시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가스 냄새를 맡고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여 사고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발생한 가스를 '1차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8일 아침 출근했을 때 기계나 자재에 녹이 슬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인근 업체 작업자들의 증언이 많았는데, 이는 1차 반응 당시 발생한 가스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차 반응이 일어난 시각과 경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1차 반응이 일어날 당시 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인수업체의 증언에 따라 시설의 노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정부관계부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19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환경청, 방재센터, 화학구조센터, 경찰서, 시흥시 등에 사고 사실이 전달되고 각 기관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시화공단에서 화학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처해야할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대응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착했을 당시에는 1차 반응이 완료된 후 안정되어 더 이상 가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염산이 방호벽 안에 갇혀 있는 상황.) 따라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그 시각에 당장 긴급하게 추가 작업을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발생한 가스의 양이 주민, 노동자 등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고를 알리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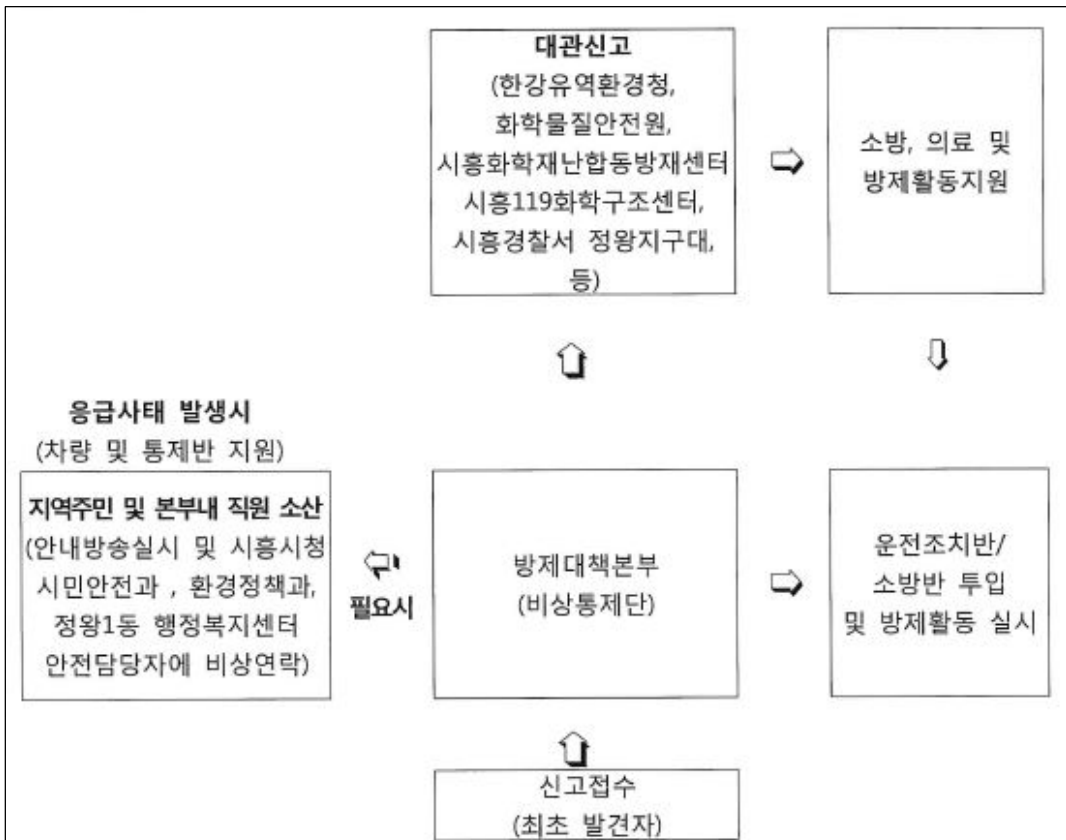
염산은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해져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유해성이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가 수거와 처리를 담당하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사고가 새벽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해 바로 염산을 수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새벽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당시는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최초 염산 수거 및 제염 작업은 8일 오전 11시 이후에 시작되고 이때 수거하는 과정에서 '2차 반응'이 일어납니다. 11시 20분 경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안개처럼 깔렸으며 참기 힘든 역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차 반응으로 가스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지역 입구 쪽 도로 양옆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대피가 이루어집니다. 차량 방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인근 공장에 대피 안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제한 구역은 9일에 해제됩니다.

8일에 이어 15일에 제염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대응은 마무리가 됩니다. 9일, 15일, 19일에 사고현장 주변에서 가스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흥화학 합동방재센터는 이번과 같이 빈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동을 중단한 모든 공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사고 신고 체계

2. 이번 사고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의문

환경청은 이번 사고를 ‘소규모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6건이었습니다. 시흥시 환경정책과 면담내용에 따르면 시화공단에서 이번 규모 정도의 사고는 연 1~2회 정도 발생하며, 이보다 큰 규모의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월담은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1) 기업이 자진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현실

정부는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를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은 환경부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사고 이전에 원경전자에 대해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현행법 상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려면 사전에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염산의 경우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로서 연 10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해관리계획서에는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출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고 발생 시 영향을 미칠 범위 안에 주민이 있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원경전자가 염산을 보유하고 사용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수거작업을 하면서 공장에 염산 및 폐산이 6~7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경전자가 염산을 연 100킬로그램 이상 사용했다면 자진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경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원경전자가 염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염산 이외에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으로는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허가면제 기준 이상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사고예방·대응 체

계 밖에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허가면제 기준 미만으로 사용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의 사고예방·대응 체계 밖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대비 물질 (97종)	유독물질 인 사고대비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 사용하는 자 ※ 해당물질 : 황산, 질산, 염산, 메탄올, 톨루엔, 과산화수소, 메틸에틸케톤, 아세트산에틸, 암모니아, 포름알데하이드 등 	영업허가 면제규정 (고시 제2015- 206호)
	유독물 질이 아닌 사고대비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 사용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제외) ※ 해당물질 : 염소, 질산나트륨, 아크릴산, 포름산, 핵사민 등 	시행규칙 제31조

화학물질 사용 사업 허가 면제 조건(사고대비물질)

(2) 1차 반응은 알리지 않아도 됐을까

8일 새벽에 있었던 1차 반응이 일어난 시점부터 이미 인근 작업장의 자재와 기계들은 녹이 슬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녹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작동을 멈춰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새벽에 공장에 찾아와야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흥시는 1차 반응이 일어났을 때부터 대응을 시작했지만 사고사실을 인근 노동자·사업자·주민 등에게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냄새를 맡고 사고현장 근처에 나왔던 사람들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출된 가스가 기준치 미만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공지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가 차서 냄새가 나고 녹이 슬어 있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현장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당시 야간작업을 하던 사람들, 인근 업체 사업주 등에게는 가스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리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3) 2차 반응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때도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던 사람들

2차 반응이 일어났을 때 공장 앞 도로 양옆의 공장들은 직접 방문하여 사고사실을 알렸고, 그 밖의 공장의 경우 차량 방송을 통해 알렸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바람은 남쪽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가스는 사고현장 북쪽으로 날아갔고, 현장조사에 의하면 약 70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도 그 냄새를 맡았으며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골목(마유로 144번길)에 출입구를 두고 있는 공장이 아닌 경우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나서야 사고를 알았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습니다.

차량방송을 듣지 못한 작업장은 보통 기계 작동 소리가 크거나 문을 닫아놓고 일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화학사고를 알리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현장 위치와 주변 공장.(빨간 원이 약 50미터 반경)

(4) 나는 아픈데 기준치 미만이니깐 괜찮은 걸까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있었던 유증기 누출과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 700명에 달하는 주민 및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눈·기관지·가슴 통증, 어지러움, 구토, 배뇨통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측정 결과 가스가 검출이 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수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바로 옆 공장에서 악취가 지속되어 신고를 했지만, 가스가 아예 검출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나거나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준치 미만이거나 검출이 되지 않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있는 것인지, 측정기의 정확도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한 다른 가스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냄새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 작업자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인근 공장에 버려져있는 보호복

현장조사 당시 사고수습 작업을 하면서 입었던 보호복이 인근 업체 안에 버려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에 상당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화학사고 때문에 사용한 보호복이 자기 일터에 버려져 있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사고현장 옆 공장에 버려져있던 보호복

방재센터는 해당 보호복이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재작업에 사용된 보호복이 여러 종류인데, 그곳에 버려진 보호복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서 보통의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도 괜찮은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학사고 대처에 사용한 장비와 물품은 모두 수거해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거 업체가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관리 감독 하는 것 또한 환경청의 책임입니다.

(6) 갑자기 일 폭탄을 맞은 노동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

염산 누출로 발생한 가스는 철에 녹이 슬게 합니다. 그래서 철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녹이 슬 자재나 기계를 노동자들이 일일이 닦아 원상복구했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전에 없던 추가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런 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해진 시간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해도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그만큼 수당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사고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주가 격려금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진 시간동안 노동강도를 높여 일을 했음에도 노동자들은 추가노동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피해업체의 노동자에게 수습을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의 추가노동이 기존과 똑같은 월급 안으로 녹아들지 않도록, 피해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염산누출로 발생한 가스에 녹이 슬 자재들

3.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사고의 경위와 위험에 대해 충분하게 알 권리, 노동자들 또한 화학사고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권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지점을 짚어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도는 효율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량이 얼마가 됐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아마도 규제 범위를 좁혀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보여주듯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허가를 득하게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실제로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안내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난이 있을 경우 우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곧바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파는 큰 범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경우 그 범위 안에 있는 주민에게만 사고를 알리는 시스템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처럼 영향 범위가 좁은 경우에 적어도 범위 안에 있는 업체 사업주에게 일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화학사고의 영향과 필요한 조치를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등 사업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방송 안내의 한계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소

리가 너무 크거나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방송을 듣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단에는 난청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방송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모두 사고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인근 주민·노동자·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학사고에 있어 노동자·사업주·주민과 정부 담당자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는 많은 화학사고를 지켜봤을 것이고 그만큼 익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지식도 전문분야인 만큼 더 풍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 자체에 대한 정보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사업주·주민들은 화학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화학사고가 날 경우 나의 몸 혹은 현장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식을 평소에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고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그 경위와 대처, 평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법 또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규모가 작든 크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고라고 하더라도 주민·노동자·사업주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화학사고 피해자들이 권리와 구제 절차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 책임은 공장을 새로 인수한 업체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인수업체의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도 바쁜데 이 책임 업체의 사업주를 찾아서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직장에 묶여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를 여러 번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수업체가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몰라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피해가 있음에도 인수업체가 찾아온 적이 없어 여전히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화학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리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시흥시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사고 직후 신속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염산누출로 발생한 가스는 호흡기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치아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스가 체내에 오랜 시간 남아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이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염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로서는 바로 병원에 갈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일하는 도중에 사업주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필요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자신 있게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화학사고에 따른 필요 조치를 충분히 전달하여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화학사고 대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연2회 화학사고 관련 민관합동훈련 및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

만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화학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및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화학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지자체의 화학사고 담당 인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 당시 많은 분들이 시흥시와 환경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이러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을 담당하는 시흥시 공무원이 2명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 같은 것이 설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화공단에서는 이 2명이 화학사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평가한 것처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으로는 이렇게

(1) 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자체에 요구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자체 해당부서에 ①사고의 정확한 내용·건강에 미치는 영향·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 ②신속한 건강검진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할수록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연락처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240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5994

(2)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라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¹⁾

물론 사업주 또한 화학사고 사실을 안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도 사업주가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사업주의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3) 화학물질 규정을 위반하는지 노동자·주민들이 감시합시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사용 관련 규정을 ‘불필요한 규제’라며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화학사고들은 오히려 화학물질 사용 관련 규정들이 허술하거나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화학물질 사용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힘은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공장, 혹은 주변 공장이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고쳐나갈 때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을 이윤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 또한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힘이 모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시다

회사는 작업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아 이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물질이 유출된 것인지 알았을 때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좋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kosha.or.kr)’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나가며

이 보고서는 현장조사, 정보공개청구, 정부부처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해결하고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민간단체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고 정부의 설명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지만 이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알려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 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화학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는 분들도 연락하신다면 힘닿는 만큼 지원을 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앞으로도 공단에서 일어나는 화학사고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월담을 찾아주신다면 함께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반월시화공단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다가 상담이 필요할 때, 노동법·노동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일터를 바꾸기 위해 나서고 싶을 때 연락 주신다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전화 031)491-2460

카카오톡 월담노동상담소

메일 goover20000@gmail.com